

지방재정소식

Kalf 한국지방재정학회(<http://www.kalf.or.kr>)

Contents

2011 **9**

- 02_ 회장 인사말
- 03_ Kalf 지방재정논단
- 07_ 특집인터뷰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
- 10_ 2011년도 한국지방재정제도의 변화
- 11_ 2011년도 한국지방재정학회 임원명단
- 12_ 2011년도 한국지방재정학회 사업진행상황
- 13_ 국제세미나 개최 소식
- 14_ 논문투고안내
- 16_ 2011 학회비 납부현황



- 발행인 : 손희준 ■ 편집인 : 신두섭, 이상범, 신유호, 정덕주 ■ 편집간사 : 유연순
- 발행처 : (사)한국지방재정학회
137 - 873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2-1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4층
Tel. 02-3488-7347, Fax. 02-3488-7376 / godwon0505@naver.com
- 디자인 : 한국행정DB센터 (Tel. 02-2269-7206 / dbcenter@paran.com / www.admindb.co.kr)



손희준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 청주대학교)

진정한 학회의 발전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어느 덧 오곡이 무르익고 수확의 계절인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지면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만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회원 여러분들 모두 평안하시리라 믿습니다.

작년 연말 회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아서 나름대로는 신진 학자들의 발굴과 회원들 간의 화합과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으나, 다들 아시다시피 올해 초 중앙정부가 느닷없이 일방적으로 취득세율의 인하조치를 단행하는 바람에 사회 각계에서 지방재정에 대한 관심과 열의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사회복지 재정수요에 직면하여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그야말로 설상가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중앙정부가 세수감소분 전액을 보전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최근 재정부담을 야기하는 정책수립과 관련해서는 중앙과 지방간 재정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하여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한국재정학회와는 공동으로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지방재정 전반에 걸쳐 많은 진전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기실 아직까지 지방재정은 예산낭비와 비효율이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 저변에 깔려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회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지방재정의 구조적인 개선과 내실화를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의 착근과 재정의 효율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이론 개발 및 적용을 위해 명실상부한 노력을 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물론 이러한 결실은 모두 전임 학회장님들을 위시하여 학회회원 여러분의 열성적인 참여와 성원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다고 봅니다. 지방재정과 지방세 등을 전공하려는 신진학자의 수는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학술공동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작금의 시선과 여건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학회는 올해에도 일본 지방재정학회와의 국제세미나 및 중국 산둥성 사회과학원과의 공동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학회의 위상을 더욱 드높였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개원을 통해 유관단체 역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학술행사의 충실화 및 정책개발의 적실성 강화 등 학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 역시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우리 학회가 몇몇 회원들만의 학회가 아닌 회원 모두의 학회로 거듭 나기를 기원하면서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을 통한 회원들 간의 소통 역시 더욱 활성화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재정에서 성인지 예산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조건



연구이사 **이재원**
(부경대학교)

성인지 예산제도는 국가 재정 사업의 계획과 집행 그리고 결산에 이르는 전체 예산과정에서 양성평등 요소를 고려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여성정책에서 정치 경제적 의미와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다. 올 3월 8일자 지방재정법 개정에서 제36조 2항으로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2013회계연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는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국가재정법은 법률 제정때부터 성인지 예산서 조항을 포함하였다. 이후 몇 년간의 준비를 걸쳐 2011년도에 정부예산안 부속서류로 성인지 예산서가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동안 지방재정 분야에서 성인지 예산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의 지방재정법 조항은 국가재정법과 연계 차원에서 신설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성인지 예산에서 추구하는 핵심전략은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이다. 성인지적 관점이 사회의 전 영역에 통합되는 것으로 여성들만을 위한 특화된 여성정책의 범주 뿐 아니라 일반사회정책 영역 또한 양성평등의 관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인지 예산정책은 1980년대 호주에서 “여성예산”(Women’s Budget)으로 출발하였다. 이후 1990년대 중반부터 UNDP와 UNIFEM을 중심으로 국제기구는 성인지 예산을 중시하여 “성인지 예산정책”을 권고하였다. 1995년 북경세계여성회의에서 행동강령으로 채택되었고 2008년 현재까지 90여개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성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성인지 예산제도의 초기 관심은 여성을 위한 예산을 좀

더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후 정책영역이 확대되어 여성예산 뿐 아니라 성중립적이라고 생각하였던 일반예산을 포함한 모든 예산에 성별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관리하는 기본법에 성인지 예산서 작성·제출이 규정된 국가는 우리나라가 최초이다. 그만큼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법률 조항의 내용이 기대만큼 실현되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지방재정에서 성인지예산제도의 도입과 정착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낙관하기는 쉽지 않다.

무엇보다, 아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성인지 예산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추진방식과 일정 그리고 예상되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방안들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의 조문이 신설되었다. 현장에서 새로운 제도를 당연한 것으로 수용하는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인지 예산제도의 핵심은 일반예산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하는 것인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는지 지자체의 예산 및 사업 담당자들에게 설명하는 작업도 쉽지 않다. 여성을 위한 예산재원을 더 확보하려면 다른 예산을 줄여야 하는데 그러면 사업별로 재원 갈등이 발생한다. 지자체 사업은 현장과 밀접하여 갈등 강도가 강한 편이다.

총량적인 예산재원 보다는 예산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하면, 그것이 왜 필요하며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를 사업담당자에게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성인지 예산제도에는 사회적 가치가 내재되어 있어 정책관리

적 속성이 강한 다른 한편으로 지자체의 현장들은 지침이 명확해야 제대로 움직인다. 이에 따라 약간의 추상성이 있는 성인지 예산제도와 현장 중심의 지방재정사업 집행은 궁합이 맞지 않을 수 있다. 지방 현장의 사업은 복잡한 것을 선호하지 않는데, 성인지 예산제도는 맥락을 이해하기가 복잡한 측면이 있다.

지방재정에서 성인지 예산제도가 지향하는 재정 사업 효과들이 실제 창출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자율로 사업 내용들을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적다. 상당 수 사업은 국고보조금으로 수행되는데, 중앙 각 부처의 사업지침에 성인지적 특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별도의 성인지 관점을 운용할 수 없다.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이 제도에 대한 인식과 노력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한 편차를 관리하는 문제도 예상된다.

이러한 쟁점과 함께 중앙정부가 작성한 현재의 성인지 예산서가 당초의 기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의 내용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부 예산사업에 대해 성별분리통계에 따라 예산재원을 성별로 배분한 여러 가지 수치를 나열하고 있는데, 각 부처별 혹은 사업별로 총평이 없으며 앞으로 자원배분에 대한 과거의 평가와 향후 방향성 구체적이지 않다. 지방재정에서는 중앙정부의 사례를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 경우에는 짧은 예산순기에 많은 문서들을 작성해야 하는 지방공무원들에게 보고서 작성 부담만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다.

예산개혁은 쉬운 작업이 아니다. 지금까지 수십년동안 시도되었던 예산개혁들은 취지와 방향성만 있고 구체적인 형식과 내용은 단기간만 지속되었던 경우가 많다. 전통적인 예산관행이 가지는 순기능도 상당하여 새로운 변화의 요소들을 쉽게 수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성인지 예산제도 역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고 보장하기 쉽지 않다. 법률로 제도화가 되었던 만큼 기대한 정책의 효과들이 제대로 창출되기 위해서는 시작 초기부터 단계적 실천 방안들을 마련하고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한다.

우선 지역사회에서의 필요성 인식 확산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며 성인지 정책에 대한 지방의원들의 관심도를 높여야 한다. 예산안 심의기간에 지방의회에 부속서류로

제출했는데 정작 지방의원들이 예산심의할 때 참고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둘째, 예산서 작성 단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사업별 예산제도가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가운데 새로운 예산단위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사업별 분류 기준을 수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기존의 예산단위를 그대로 운용하면 성인지적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이론 보다는 현실의 문제이다.

셋째, 사회복지서비스나 농업 분야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성인지 예산서와 내용을 연계해야 한다. 그런데 중앙정부 예산서 자체가 충분하지 않고 지적받고 있어 그대로 수용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양성평등 수준이 높은 뉴질랜드의 경우는 성인지 예산서가 없다. 모든 정책을 고려할 때 양성평등 요소가 당연히 반영되기 때문이다. 뉴질랜드의 사례는 우연이 아니다. 양성평등과 성인지적 정책이 일관성있게 추진되었던 역사의 산물이다. 사회적 가치에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중요하다. 사회정책에서는 지역, 소득, 연령 등과 같은 사회지표가 고려되어 정책이 만들어지고 예산이 배분된다. 성인지 예산서는 이제 모든 재정사업에서 새로운 정책변수로 '양성평등'을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성인지예산이 주창하는 성주류화 가치가 자연스럽게 수용되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지역사회의 생산성과 발전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책임'에 대한 확신이 있고 또 그것이 실현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수십년동안 정부 정책관리의 기본틀로 정립되어 있는 결과지향적 성과주의와 성인지 예산제도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예산재원의 배분에 따른 구체적인 성과책임을 강조한다. 성과책임에서는 효율성에 대한 시장책임과 함께 성과에 따른 자원배분이라는 개인책임도 동시에 부과된다. 더욱이 조직과 인사관리를 정책과 연계시키고 마지막으로 예산재원배분과도 결합시키는 통합성과관리체계를 강조한다. 성인지 예산제도가 다양한 예산서 형식들 가운데 우선순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주류 예산부문에서 작동하고 있는 통합성과관리체계에서 의미있는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정책적 의의와 확대발전을 위한 정책구상



조 기 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상생발전기금은 비록 지방소비세 도입의 일환으로 설치되었지만 지역발전정책과 지방재정적 관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상생과 협력, 규모화, 차별화된 발전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적극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그것은 정부의 재정지원과 자치단체의 지구노력이 연계될 때 비로소 진정한 발전기반이 확립된다는 나름대로의 철학에 근거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낙후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졌으나 유사·중복사업의 남발, 획일화된 사업추진 등으로 성과창출이 부진하였다는 반성이기도 하다. 아울러 지역의 경쟁력과 내발적 발전에 필요한 역량을 제고하기 보다는 소이기주의에 집착하여 소모적인 갈등만 초래하였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주지하듯이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방소비세 도입과 맞물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동반자적 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수단으로 설치되었다. 이것은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주체적 관점 보다는 피동적인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도입하였음을 의미한다. 때문에 이 기금의 성격이나 운용방식, 다른 재정지원제도와 연계성 등을 차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 2009년까지 운용하는 한시 재원으로 출발한 것도 이러한 사정에 따른 결과로 이해된다. 그러나 지역상생발전기금은 도입 배경과 취지가 무엇이든 지방자치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제도이고,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관점에서든 그 의의는 매우 커 2008년에 종료하기 보다는 이를 확대 발전시켜 진정한 지역발전재원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먼저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종합적인 지역발전을 지향하는 재원이다.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직적으로 이전되는 재원은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 재원보장, 재정사업의 효율화 등을 목적으로 운용한다. 반면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역발전의 단일 목표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재정지원수단으로서 포괄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지원대상 사업을 사전에 구속하지도 않으며 지역발전이라는 포괄적인 용도를 허용하여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기획과 예산집행을 허용하고 있다. 즉, 지역발전을 위하여 기금의 형식을 빌린 자치단체 상호간의 포괄적인 보조금(block grants)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자치단체 상호간의 자율적인 재정조정기능을 수행하며 역교부금적 성격을 갖는다. 그간에 자치단체 상호간의 재정조정기능은 재정보전금, 재산세공동과제 등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재정보전금은 징수교부금제도에서 출발하여 시·도세 징세비용 보전과 관할구역 내 시·군간 재정조정기능을 수행한다. 재산세 공동과제 역시 전국적으로 보편화된 제도가 아니라는 점,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간 재정조정기능을 수행한다는 점, 그리고 재산세를 재원으로 한 공동세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셋째,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세입기준 형평화 교부금의 역할을 수행한다. 북유럽 국가들이 주로 운용하는 형평화 교부금은 크게 세입기준 형평화 교부금과 세출기준 형평화 교부금으로 구분된다. 스웨덴에서 운용하는 세입기준 형평화 교부금은 1인당 과세소득이 전국 평균치를 15% 초과하는 자치단체가 주로 부담하며 중앙정부도 부족분을 공동으

로 부담하여 조성한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방소비세액이 큰 수도권 3개 시·도가 재원을 부담하여 16개 시·도에 배분하는 운용체계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스웨덴식 세입기준 형평화 교부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 다만,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스웨덴과 다르게 중앙정부의 관여없이 시·도가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운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넷째, 시·도 상호간의 수평적 형평화기능을 수행한다. 정부 간 재정관계에서 재정조정은 상급정부가 하급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수직조정형과 민본단체와 부유단체 사이의 수평조정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수직조정형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지방교부세, 보조금, 재정보전금 등 우리나라에서 운용하는 재정조정 재원들 역시 수직조정형에 해당한다. 재산세 공동과세도 본질에 있어서는 공동세이면서 서울특별시와 주체가 되어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도록 배분하기 때문에 수직조정형에 가깝다. 반면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재정여건이 부유한 수도권 3개 시·도가 출연하여 비수도권 시·도에 배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전형적인 수평조정형에 해당한다. 따라서 재정조정방식으로 볼 때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세입기준 수평조정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역상생발전기금은 ① 지역 간 재정격차의 완화 보다는 지역발전이라는 실질적인 목표를 추구하며, ② 수평조정형 배분방식으로 지역 간의 재정격차를 완화하고, ③ 운용·관리의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도입하였으며, ④ 조정재원 역시 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관점에서 대단히 획기적인 제도로 평가된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이 갖는 정책의의가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2009년까지 한시재원으로 시간적으로 그 역할이 제한적이고, 수도권 3개 시·도의 소극적인 자세가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기금이 자립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입과 세출의 안정적인 관리가 중요한데 세입 자체가 불안정하면 기금사업의 체계적인 추진도 어렵게 된다. 심지어는 지금처럼 자치단체에 배분하여 사업을 집행하는 재정지원사업만 운용할 경우에는 2009년 이후 기금이 소진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당하는 최악의 상황도 도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자치단체 상호간 자율적인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더 나아가 지

속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세입·세출의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대한 출연의 주체, 출연비율, 배분기준, 용도, 관리 등을 주요 사항들의 법적 기반을 완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출연비율의 경우 해당되는 자치단체의 합의에 의존하고 있는데, 관련 법령에 규정하면서 출연금에 대한 정책노력은 별도의 재정지원제도를 이용하여 배려하는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

둘째, 기금 자체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조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처럼 출연금 전체를 재정지원사업에 투입하게 되면 조성잔액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출연금의 일부를 적립하거나 투·융자사업까지 영역을 확대하여 수익을 창출하도록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전체 출연금 3,000억원을 16개 시·도에 배분하면 평균 187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적립하는 대안은 현실적으로 큰 의미를 갖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신규사업의 창출이나 융자기능의 도입이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이며 지금부터 관련 법령의 개정 등 법제화 준비가 필요하다.

셋째, 융자기능 도입 시 지방채시장의 선진화와 연계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지방채 인수시장은 90% 가까이 공공자금을 의존하는 다소 후진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공공자금 조차도 축소하거나 융자조건을 시장조건에 연계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과거처럼 양질의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어려울 전망이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경우 인수금액을 축소하여 조만간 폐지할 방침이며 지역개발기금도 시장금리와 큰 차이가 없어 시·군에서 꺼리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감안할 때 지역상생발전기금은 과거 일본의 지방채금융공고와 같이 양질의 자금을 공급하는 지방금융기구의 초석으로 발전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조합채를 발행하여 그 재원으로 양질의 지방채 인수자금으로 활용하거나, 지방채시장의 선진화 차원에서 자치단체의 공모채 발행을 촉진하는 운영자금으로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청사 정비사업 등 제한적인 사업이 아니라 지방중소기업이나 유망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자치단체 공모채발행의 지원, 적격사업 평가 등으로 그 영역을 확대하는 전략과 실행가능한 대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지방재정 확충 및 세원불균형 완화 정책, 지방재정세제국장에게 듣는다!



정 재 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

Q1. 우선,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작업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양 후 지방재정의 변화 및 지방재정에 미친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지방세는 자치단체 세입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2011년 기준으로 전체 세입의 35%를 차지할 만큼 규모면에서 가장 클 뿐 아니라, 자치단체가 자율성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주재원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지방세 확충은 자치단체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진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성숙으로 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의 요구는 다양해지고 그 수준도 높아지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벌어들이는 세입이 증가하면서 이같은 요구에 적절히 그리고 적시에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지방세 확충으로 재정운용의 책임성 확보도

가능해집니다. 자치단체 스스로의 노력이 지방세입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가 정착되면 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더욱 분발하게 됩니다. 이는 지방세 구조를 현재의 재산과세 중심에서 소득·소비과세 중심으로 바꿔 나가고자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방소득·소비세 확대 등 지방세 구조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소비 증대가 지방세수 증가로 이어지도록 배분지표 및 기준 등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지방세 비중은 주요 외국과 비교해서 아직 낮은 수준입니다. 지방세 증가가 정착되면 결국 중앙정부에 의존적인 재정운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가능하도록 지방세 비중을 확대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Q2. 현재 행정안전부가 수행하고 있는 지방재정 확충 방안과 관련한 정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재정 확충은 세입과 세출,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입 측면에서는 지방세를 확충하기 위해 지방소득·소비세의 확대 발전과 지방세 감면제도 정비 등이 필요합니다. 먼저 2010년에 부가가치세의 5%로 도입된 지방소비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3년간 준비를 거쳐 2013년에 부가가치세의 10%로 추가 확대를 추진하기로 한 만큼,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2010년 지방소비세와 함께 도입된 지방소득세도 독립세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독립세로 전환되면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등을 독자적으로 설정할 수 있어 세입 자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감면제도 정비도 중요합니다. 지방세 감면 중기운용계획을 운용하여 2010년 기준 22.1% 수준인 감면비율을 2015년까지 13.9%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2조원의 세입 확충 효과가 기대됩니다.

세출 측면에서는 사회복지사업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은 대부분 국고보조사업 형태로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가 재원을 분담합니다. 분담의 기준이 되는 국고보조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자치단체 재정여건을 고려하는 차등보조율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2005년에 지방으로 이양된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개선 요구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방이양된 이후에 중앙부처에서 정책대상은 확대했지만, 분권교부세로 교부되는 국비 지원은 그에 미치지 못해 추가 부담분을 자치단체에서 감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 감사원, 학계 등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만큼,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 분권교부세율 인상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Q3. 지방세 세목 재정비 등 자치단체 간 세원불균형 완화를 위한 정책 발굴에 힘쓰고 계신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지방세 세입을 보면 광역 자치단체간, 광역 자치단체와 기초 자치단체간, 그리고 기초 자치단체간에도

불균형이 있습니다. 자치단체간의 지방세 세원 불균형은 기본적으로 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완화가 됩니다. 하지만 지방세 자체의 불균형 완화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세 확충, 세목 정비 등의 과정에서 불균형 완화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과정에서도 세원 불균형 완화가 정책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지방소비세를 배분하는 기준에 권역별 가중치를 적용함으로써 세수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간 재정을 격차를 완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방소비세의 수도권 집중도가 55.6%(10년 예산기준)에서 32.8%까지 완화되었습니다.

아울러 공동과세, 세목조정 등을 통해서도 세원 불균형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재산세 공동과세는 세원 불균형 완화를 위해 도입된 대표적 사례입니다. 서울시 자치구간 세원 불균형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재산세의 경우, 공동과세를 도입하기 전인 2007년에는 최고·최저구 간의 차이가 9.9배에 달하였으나 시행 4년이 지난 2011년에는 2.7배로 그 격차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2010년에 추진된 지방세 세목 간소화도 세원 불균형 완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지방세 세목이 총 16개에서 11개로 간소화되는 과정에서 특·광역시세와 자치구세간에 일부 세목이 통합되었고, 세목 교환 등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2010년 예산 기준으로 광역시 자치구는 7,394억원, 특별시 자치구는 415억원의 세원 이전 효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소득·소비세의 발전, 신세원 발굴 등 지방세를 확충하는 과정에서 자치단체간 세원불균형이 완화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Q4. 재정 자율성 제고 못지 않게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이와 관련된 정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자치제도가 정착하면서 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효율적인 재정지출이 발생하면 주민, 언론, 지방의회 등의 비판과 시정요구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의 비효율적인 재정지출을 방지하고 재정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는 무엇보다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집행하는지, 낭비는 없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의무화하고, 예산낭비 신고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부터 전 자치단체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낭비 신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전 자치단체의 예산 낭비 신고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예산은 한 번 비효율적으로 지출하면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검토와 상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심사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지방재정 위기경보시스템을 구축

할 계획입니다. 투융자 심사제도는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주요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해 예산편성전에 사업의 타당성·효율성 등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각 자치단체의 투자방향 및 우선순위를 제3의 기관에서 사전 검토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내실있게 운영한다면 예산낭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기경보시스템은 재정수지, 채무, 자금, 공기업 부채 등 주요 재정지표를 모니터링하여 자치단체 재정위험 상황을 사전에 예측하는 시스템입니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재정위험 수준을 구분하고, 재정위험이 우려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재정건전화 조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경제위기의 불확실성이 아직 높고 복지수요가 증가하는 등 최근의 정책환경 변화는 건전한 재정운용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도 자주재원 확충과 비효율적인 재정지출 통제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높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높이되 책임성은 확보하는 방향으로, 동시에 지역간 불균형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재정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인간안내



지역 일자리 창출의 미래 전략

사구치 카즈히로 편저 / 권영석 역 / 강재훈 감수 / 신국판 / 22,000원

발행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한국행정DB센터

미래의 지역 일자리 창출은 단순히 직업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구성하는 주민과 함께 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지역사회를 살리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일본의 지역 사례들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서 장 : 과제와 문제의식 지역에 대한 주목, 연계와 역할자, 도서의 구성과 전개
- 제1장 : 입지기업과 향토기업의 자주적 경제발전 (나가노현 이나시의 산업과 고용)
- 제2장 : 자치단체 주도의 전개와 가능성(시마네현 및 히카와초의 산업과 고용)
- 제3장 : 개방적 산업진흥과 고용창출(홋카이도 토마코마이시의 대응·과제·가능성)
- 제4장 : 밸리 구성과 지식집약형 산업 형성(미에현 및 카에야마시 사례)
- 제5장 : 인구감소시대의 지역사회와 U턴(나가노현 이나시의 경험과 시마네현의 대응)
- 제6장 : 산·관·학 네트워크 최전선(시즈오카현 하마마츠시의 창업도시무상)
- 제7장 : 공민관을 지역거점으로 한 민관협동의 복지마을(시마네현 마츠에시)
- 제8장 : 고용위기와 지방동행정의 역할



총무이사 김성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근의 지방재정 · 세제 동향

▶ 지자체 주민참여예산제도 및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 2011년 3월 8일 지자체에 주민참여예산제도 및 성인지 예산제도 시행을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 이미 40% 이상의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법적 의무제도로서의 위상을 갖게 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11년도 상반기 중으로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로 하여금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조례를 제정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추후에 우수사례의 발표를 추진할 예정임
- 성인지예산제도의 경우도 2013년 회계연도부터 244개 전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예산서 · 결산서 작성 및 지방의회 제출이 의무화 됨에 따라 양성평등한 관점에서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과 환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 만 5세 유아교육 · 보육비 지원 확대 및 100% 교부금 지출

- 2012년 3월부터 모든 만5세를 대상으로 유치원비와 어린이집 보육비를 확대 지원함
- 현재 만5세 이하 어린이를 둔 가정 중 소득기준으로 전체 70%의 가정에 대해 지원하던 것을 2012년에는 만5세아 모두에게 확대 지원하며, 지원단기도 매월('11) 17.7만원 → ('12) 20만원 → ('13) 22만원 → ('14) 24만원 → ('15) 27만원 → ('16) 30만원으로 늘려 지원할 계획임
- 특히, 지금까지 만5세아 유치원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고, 어린이집 보육비는 국고와 지방비로 부담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모든 만5세아 교육 · 보육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함

▶ 재정위기 지자체 신규사업 제한

- 행정안전부는 2011년 5월 30일 재정위험이 심각한 지자체의 경우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는 사전경보운영시스템이

- 구축되어 지자체 발행이나 신규사업이 제한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 했음
- 재정위기단체는 통합재정수지 예산대비채무비율 등 7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심각' 단계인 곳, 즉, 전년도 결산 결과 적자비율 30% 이상, 예산대비 채무비율 40% 이상 등에 해당함
- 또한 지자체 보조금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현장실사와 시정명령권을 신설하고, 보조사업자의 실적보고와 보조사업 성과평가제를 의무화 함

▶ 주택 취득세 50% 감면 국회통과

- 2011년 4월 29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2011년 3월 22일부터 2011년 말까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세 부담이 절반으로 경감
-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여 1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존 2%에서 변경된 1% 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고,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을 구입하여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존 4%에서 변경된 2%의 세율만 적용 받게 됨

▶ '지방세 감면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일원화

- 행정안전부는 2011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 분법제도에 따라 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지방세 감면규정을 이관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음
- 2010년 전체 지방세 감면 14조원 중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은 1.3조원으로 9.3%를 차지하고 있는데 입법 소관부처가 기획재정부이나, 질의회산에 대한 유권해석 등 운영은 행정안전부에서 담당하고 있어 납세자들의 혼란이 있어 왔음
-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중 일몰기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57%를 이관시 일몰기한을 설정하여 이관하나, 취약계층, 서민대상 감면은 종전해택을 유지할 계획임

➤ 2011년도 한국지방재정학회 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소 속)			
고 문	이상복(한국지방재정공제회) 김홍래(전 행안부차관) 한표환(한국지방행정연구원)			
명 예 회 장	유경문(서경대)			
회 장	손희준(청주대)			
차 기 회 장	김의섭(한남대)			
부 회 장	민 기(제주대) 김성순(단국대)	남창우(경북대) 우명동(성신여대)	배인명(서울여대) 이창균(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삼주(한국지방행정연구원)
편집위원장	주만수(한양대)			
편집부위원장	김재훈(서울시립대)			
편 집 위 원	곽채기(동국대) 정종필(지방행정 연수원) 최병호(부산대) 이재원(부경대)	김현아(조세연구원) 신 열(목원대) 조계근(강원발전 연구원) 유태현(남서울대)	신두섭(한국지방행정연구원) 오병기(전남발전 연구원) 남창우(경북대) 라휘문(성결대)	배인명(서울여대) 원구환(한남대) 박병희(순천대)
감 사	김홍환(전국시도지사협의회) 이용환(경기개발 연구원)			
총 무 이 사	라휘문(성결대)	박충훈(경기개발 연구원)	김성주(한국지방 행정연구원)	
연 구 이 사	이재원(부경대) 유태현(남서울대)	금재덕(서울시립대) 박병희(순천대)	장인봉(신홍대)	최병호(부산대)
섭 외 이 사	신두섭(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상범(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신유호(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정덕주(서해대)
국 제 이 사	엄태호(연세대)	이현우(경기개발 연구원)	최원구(인천발전 연구원)	
이 사 (25명)	권오성(한국행정 연구원) 서정섭(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계근(강원발전 연구원) 김근중(강릉대) 안 진(전북대) 임상오(상지대) 박정수(씨엔에프 시스템)	김성호(전국시도지사협의회) 원구환(한남대) 조임곤(경기대) 김대영(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염명배(충남대) 이영희(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곽채기(동국대) 이세구(서울시 정개발연구원) 정영희(청주대) 김성태(청주대) 오병기(전남발전 연구원) 임성일(한국지방행정연구원)	손옥래(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원희(한경대) 최용환(충북개발 연구원) 김용승(카톨릭대) 이명훈(고려대) 신종렬(방송통신대)
총 무 간 사	유연순(한국지방 재정학회)			

➤ 연구 분야 : 학술행사

학술행사명	일 정	기 획 주 제	장 소	비 고
춘계학술대회	2011. 3. 11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재정관리 혁신	방송통신대학교	주최 : 한국지방재정학회 김사연구원 후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정책토론회	2011. 3. 31	지방재정의 근본적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 한국지방재정학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국회의원 정책토론회	2011. 4. 8	지방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비례적 지방소득세 도입방안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주최 : 국회의원 조배숙 후원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한국지방재정학회
지방재정세미나	2011. 04. 21 ~ 04. 22	사회복지분야 국가와 지방의 자원분담체계에 개선	전라남도 진도군 향토문화회관	주최 :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후원 :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진도군
분권촉진위원회 심포지엄	2011. 5. 19	분권화시대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세미나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주최 : 대동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후원 :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세협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춘계지방세세미나	2011. 6. 1	지방소비세제도 및 지방소득세제도의 발전방안	대구, 인터볼고 호텔	주최 : 한국지방재정학회 행정안전부 대구광역시, 대구시 북구 후원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제주정책세미나	2011. 6. 14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적 재정책확충 모델 법제화를 위한 재정정책세미나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원 : 한국지방재정학회
지역발전 전략세미나	2011. 7. 14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방안	지방행정연수원	주최 : 한국지방재정학회 지방행정연수원
지역발전 국제컨퍼런스	2011. 9. 8~9. 9	지역발전을 위한 지자체간의 연계협력과 갈등관리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주최 : 지역발전위원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후원 : 한국지방재정학회
한·중·일 국제학술대회	2011. 9. 30	동아시아 국가의 지방세와 지역개발 정책 과제	성균관대 법학관 1층	주최 : 한국지방재정학회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주관 : 한국지방재정학회
추계정책세미나	2011. 10. 19~20	미정	충북 청주	주최 :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후원 : 행정안전부
제주특별세미나	2011. 10.	미정	제주도	미정
동계학술대회	2011. 12	미정	미정	미정

➤ 학회 현안사업 : 국제세미나

▶ 일본지방세세미나 (한·일 국제세미나)

- 일시 : 2011. 5. 28 ~ 29
- 장소 : 일본 오키나와
- 주관 : 일본지방재정학회
- 후원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한·중 국제학술대회

- 일시 : 2011. 7. 19 ~ 22
- 장소 : 중국산둥사회과학원
- 주관 : 한국지방재정학회
- 후원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일 세미나 : 일본지방재정학회 참가

〈일본지방재정학회 19회 대회〉

- 일 시 : 2011. 5. 28 ~ 29
- 장 소 : 일본 오키나와
- 주 최 : 일본지방재정학회
- 후 원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제1일 : 5월28일(토)

- 특별분과 : 한국세션(12:30~14:30)

좌 장 : 江川雅司 (明治学院大学)

駐韓美軍駐屯による地方財政の支援問題と改善 주한미군주둔에 따른 지방재정 지원문제와 개선방안

- 발 표 : 이용환 (경기개발연구원)
- 토 론 자 : 川瀬 光義 (京都府立大学)

濟州道地域公共資本の効率性に關する研究 제주도지역공공자본의 경쟁력에 관한 연구

- 발 표 : 최병호 (부산대학교)
주만수 (한양대학교)
- 토 론 자 : 손희준 (청주대, 한국지방재정학회장)

제2일 : 5월29일(일)

- 특별분과 : 자유주제(13:00~15:40)

좌 장 : 鶴田 広巳 (関西大学)

韓国における地方財政調整制度の実態分析 - 地方財政補填禁金制度를 中心に - 한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 실태 분석 - 재정보전금제도를 중심으로-

- 발 표 : 이현우 (경기개발연구원)
박충훈 (경기개발연구원)
라휘문 (성결대학교)
- 토 론 자 : 兪和 (茨城大学)

한중 세미나 : 산동사회과학원 참가

〈한·중 국제학술대회〉

- 일 시 : 2011. 7. 19 ~ 22
- 장 소 : 중국제남, 산동사회과학원
- 주 최 : 한국지방재정학회
- 후 원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0:00 ~ 10:20 개회식

- 개회사 : 崔 林 (산동사회과학원소청연구중심부주임)
- 축 사 : 손희준 (한국지방재정학회장)

10:20 ~ 11:00 제 1 세션

- 사 회 : 李述森 (산동사회과학연구원정치학연구소소장)
- 발 표 : 유태현 (남서울대학교)
"한국의 지방세제개편과 정부간 재정관계의 변화"
- 토 론 : 张 文 (산동사회과학연구원계정금융연구소부소장)
김대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鞠立新 (상해행정학원경제연구소소장)

11:00 ~ 11:20 휴 식

11:20 ~ 12:00 제 2 세션

- 사 회 : 윤석완 (전북대학교)
- 발 표 : 张清津 (산동사회과학연구원농촌발전연구소소장)
"산동성제도 경쟁력향상에 관한 연구"
- 토 론 : 任继明 (산동사회과학연구원산동발전연구소부주임)
김혜란 (주성대학교)
李敦瑞 (상해행정학원)

12:00 ~ 12:20 폐 회 식

- 姚东方 (산동사회과학연구원부원장)
- 이재은 (경기대학교)

12:20 ~ 13:30 오 찬

『한국지방재정논집』 투고안내

1. 투고 논문의 대상

투고논문은 지방재정 및 관련 분야에서 독창성 및 적실성을 갖는 학술논문으로서 다른 학회지 또는 문헌 등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단, 발표를 위한 가인쇄물(예: 발표논문집) 또는 유인물 등은 발표된 논문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2. 투고 논문의 종류

일반논문, 정책논단, 서평

3. 투고자격

본 학회의 회원(회비 완납자)은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있으며, 공동논문일 경우 본 학회의 회원이 아닌 자와 공동투고 할 수 있다.

4. 논문접수 일정

논문접수 및 심사는 연중 계속해서 실시한다. 단, 논문 발행일 2개월 전에 접수를 마감하며, 그 기한을 넘어서 접수된 원고는 다음 회에 간행되는 논문집에 투고한 것으로 한다.

(4월발간 - 2월28일 마감 / 8월발간 - 6월30일 마감 / 12월발간 - 10월30일 마감)

5. 논문제출 방식

투고 논문은 편집위원장에게 이메일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편집위원회는 이메일로 접수된 사실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논문제출 이메일 : godwon0505@naver.com
- 제목 [논문투고 - 성함]

6. 수정·재심 논문

투고논문의 심사결과 수정 또는 재심 의뢰를 받은 경우 수정된 논문의 제출은 원 논문의 제출과 동일한 과정을 거친다. 최종 게재확정 통보를 받으면 최종원고를 e-mail로 1부 제출한다.

<학회비 납부 및 논문게재비안내>

한국지방재정학회 논문게재비 내역

- 일반논문 : 5만원
- 지원논문 : 10만원
- 게재 확정시 논문 게재료 납부
- 학회비 납부 회원에 대해 게재 허용

논문 게재료 납부 안내

- 논문게재료 납부계좌
-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301-635773 (예금주 : 한국지방재정학회)

e-호조시스템의 유지보수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모바일주민참여시스템 구축

지방자치단체의 업무혁신에 앞장서는 씨앤에프시스템!!



01 모바일주민참여시스템(모바일시민평가지스템)

현대인의 필수품인 모바일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시스템으로, 시민과 행정기관과의 소통을 원활히하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Feedback기능과 각종 참여기능으로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시스템입니다.
(화성시 구축 중)

02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주요업무(사업)를 기반으로 성과업무를 통합하여 사업-성과지표-전략-미션-비전의 측정 및 평가가 가능한 한국형 통합성과관리시스템입니다.
(화성시 및 포천시 구축)

03 사업별재무회계시스템

사업예산제도에 기초한 시스템으로 예산편성·배정·집행·결산 및 복식부기 결산과 자산 관리의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재무구조와 특성을 반영한 재무회계시스템입니다.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조직위원회, 순천시 국제정원박람회 추진단)

회 사 명	씨앤에프시스템(주)	설 립 년 도	2009년 01월
대 표 이 사	박 정 수	대 표 번 호	02-537-0514
사업장주소	서울시 서초구 방배4동 854-5 미래빌딩2층		
홈 페이지	http://www.cnfsystem.co.kr		

» 한국지방재정학회 연회비 내역

구 분		회 비	구 분	회 비
개인회원		3만원	회장	80만원
기관회원	광역자치단체	50만원	차기회장	50만원
	기초자치단체	30만원	부회장	20만원
	지방의회	20만원	상임이사	8만원
	연구소·경제단체	30만원		
	도서관 및 대학	10만원	평생회원	40만원

» 회비납부 계좌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601-635774 (예금주 : 한국지방재정학회)

» 회비납부자 명단 (2011년 8월 31일 기준)

회비 납부자 명단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락되거나 금액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연락 주시면 확인하여 드리겠습니다. (02-3488-7347)

개인회원 | 장노순(강원대), 윤석원(전북대), 김행범(부산대), 신무섭(전북대), 조종만(충북발전연구원), 정성찬(특허청) 류민정(경기개발연구원), 차주현(서울시립대), 박광배(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영강(동의대), 유금록(군산대), 조택희(서원대), 김홍현(전국시도지사협의회), 한윤석(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허명순(감시연구원), 황진영(), 정군오(군산대), 함우식(우석대), 김혜란(주성대), 박갈현(청주대), 김재영(인천대), 최미희(), 김노창(), 남형우(서울시립대), 박병식(동국대), 무명 1

평생회원 | 강인재(전북대), 김동건(서울대), 김동완(소방방재청), 김수근(아주대), 김종웅(대구 한의대), 김진근(경남발전연구원), 김현하(조세연구원), 김홍래(전 행인부차관), 문병근(부산대), 문영세(국방대), 민 기(제주대), 박병희(순천대), 박원표(전 한남대), 박정수(이화여대), 박종훈(경기개발연구원), 배인명(서울여대), 배준식(서울시정개발연구원), 손희준(청주대), 신종렬(한국방통신대), 엄태호(연세대), 엄명배(충남대), 오병기(전남발전연구원), 오영근(수원대), 우명동(성신여대), 원구환(한남대), 유경문(서경대), 유태현(남서울대), 윤영진(계명대), 이남국(부경대), 이삼주(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상범(시군구청협의회), 이수범(백림조세연구원장), 이재원(부경대), 이재은(경기대), 이창균(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필우(한국납세자연협회), 이현우(경기개발연구원), 전상경(동아대), 정진현(제주대), 정종필(지방행정연수원), 최병호(부산대), 최진혁(충남대), 홍기용(인천대), 이원희(한경대), 김재훈(서울시립대), 라휘문(성결대), 조임근(경기대), 장덕희(국민대), 정영희(청주대), 남창우(경북대)

특별회비 | 박정수(C&F System) : 200만원, 박길성(한국행정DB센터) : 100만원

임원회비 | 김재훈(서울시립대), 이상범(전국시군구청협의회), 김성주(한국지방행정연구원), 손희준(청주대), 오병기(전남발전연구원), 이영희(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명훈(고려대), 엄태호(연세대), 김성순(단국대), 조기현(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병희(순천대), 김성태(청주대), 라휘문(성결대), 조임근(경기대), 민 기(제주대), 김익섭(한남대), 정영희(청주대), 이삼주(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인명(서울여대), 이현우(경기개발연구원), 원구환(한남대), 유태현(남서울대), 금재덕(서울시립대), 이원희(한경대), 신두섭(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관회원 | 지방행정연수원, 서울여대도서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안양시의회 지방행정연구원